

특허출원과 우선심사

특허출원을 빨리 심사받아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은 없나?

특허출원은 출원심사 청구순위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제도는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또는 산업정책상 필요한

때에는 일정 범위내에서 예외를 두어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고 있다.

- 우선심사의 대상으로는
- (1)방위산업 분야의 출원
- (2)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3)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

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과 이들 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출원 등이 있으며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무부장관의 우선심사 추천이 있어야 한다.

우선심사는 심사만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것이며 심사내용은 일반출원과 동일하다.

실용신안 공보와 이의 신청

실용신안공보를 열람하다 보니까 이미 국내에도 나와 있는 외국제품과 아주 유사한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나?

출원공고된 실용신안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하다든지 이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

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상실되어 이의신청 및 거절사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서에 그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추가제출도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보정기간인 30일 이내에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허출원의 공개와 공고

특허출원의 공개와 공고를 하는 이유와 그 차이는 무엇인가?

특허출원의 공개는 출원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내용을 공개공보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출원건수의 증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출원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불안과 동일발명의 중복출원이나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세서 중 발명의 명칭,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만을 공

개한다. 그리고 특허출원의 공고는 특허출원중의 심사청구분에 대하여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알리어 그 출원이 특허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의 완벽을 기하고 또한 부실권리를 미연에 방지하지만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발명의 내용 전부를 공개한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의 공개나 공고는 기술의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지만 그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고의 효과로서는 가보호권이 발생하므로 출원공고된 발명이 타인이 실시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원공개와 효과로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고된 경우에는 출원공개후부터 출원공고전까지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여야 한다.